제 2 3 0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1.16.)

# 조례 · 규칙안 검토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허 통 현]

##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 4.

나. 발 의 자: 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

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개정이유

- 2018년도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7년도 월정수당에서 3.5%를 인상하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을 반영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 제2항)
  - O 1.703,440원 ⇒ 1,763,060원
- 나.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제7조 별표1)
  - 운임과 숙박비 정액 지급 ⇒ 실비 지급

	현 행					개 정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야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6,000	실비 (1등급)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지방자치법」제33조
-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3)「공무원여비규정」
- 나. 예산 조치: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 다. 집행부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O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금액을 3.5% 인상하고,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와 국내여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실비 지급제 도입 등 반영하여 의원 여비 지급 기준 범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O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 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 □「공무워 여비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타법개정]

-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 (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국외 여행자만 해당하며, 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9.>②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전문개정 2010.11.10.] [제목개정 2011.2.9.]

-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10.]

-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 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 (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 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 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인사혁신처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을 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배분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0.]

-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 제17조(동일 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9.,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 기간 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 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 제22조(국외 가족여비) 국외 가족여비는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소속 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 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③ 외국 근무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발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급·직무등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10.]
- 제26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공무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 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제22조에 따라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는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2명 이내의 범위에서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2.>
  - ③ 제2항에 따른 여비는 7일의 범위에서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가목 해당 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고,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 ④ 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 중이던 가족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한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⑤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비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급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0.11.10.]
- 제27조(전역한 사람 등의 여비)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하거나 병역을 면제받아 귀가하는 사람에 대한 귀가 여비와 휴가자에 대한 여비는 국방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의무경찰, 경비교도(警備矯導) 및 의무소방대원으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사람과 휴가자에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귀가 여비와 휴가자 여비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 제29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이 영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 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대통령 특사(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의 여비는 별표 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워)

							<u> </u>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 비
I 正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은 50,000)	20,000

-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 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 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 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7호(2016.7.4.))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 이하 생략 ~

#### 2. 여비지급 기준

-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 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 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 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 다.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18. 1. 4.

나. 발 의 자: 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

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18. 1. 9.

## 2. 개정이유

○ 지난('14.5.2.)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통일된 의원배지 교부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의원배지 교부방법 변경(안 제8조 제1항)

O 당초: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따라 번호순 교부

O 변경: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발급대장 관리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2)「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2조
- 나. 예산 조치: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 다. 집행부의견조회: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난 2014년 5월 2일자로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전국 시·군·구·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표준안을 제정하여 각 지자체에 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배지 교부방법을 통일시키고 사용하는 추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 O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배지 교부)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 참고자료

○ 관련법령: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기타자료: 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 선정통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216)

○ 입법예고: 2016. 11.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 경남 시·군의회

시 군		배지교부방법	시 군	배지교부방법	비고
도의회		의원등록 시	의 령	의원등록 시	
창	원	의원별로 교부	함 안	선거구 순서 번호순	
진	주	선거구 순서 번호순	창 녕	의원등록 시	
통	영	의원등록 시	고 성	의원별로 교부	
사	천	의원등록 시	남 해	의원등록 시	
김	해	의원등록 시	하 동	의원등록 시	
밀	야	선거구 순서 번호순	산 청	선거구 순서 번호순	
거	제	의원등록 시	함 양	선거구 순서 번호순	
양	산	선거구 순서 번호순	합 천	의원등록 시	